

강화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강화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강화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0조의5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19년 5월 24일

강화군의회의장



1. 조 례 명 : 강화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
조례안

2. 제정이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모범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증 발급 등(안 제4조, 안 제5조)

- 다. 지정의 유효기간, 지정의 취소또는 반납 등(안 제6조, 안 제7조)
- 라.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발췌서
 - 「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」
 -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」
- 관련사업계획서: 해당사항 없음
- 예산수반사항: 해당사항 없음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7일까지 강화군의회의회장(의회사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(☎930-3504)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- 라. 보내실 곳 :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
 - 팩 스 : 032-930-3509
 - 주 소 : (23031)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(강화군청)

강화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1. “자동차관리사업”이란 「자동차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한다)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,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.
2. “모범사업자”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“시행규칙”이라한다)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.

제3조(계획의 수립) 강화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(이하 “모범사업자”라 한다) 지정계획 수립시 군보 또는 관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)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[별지 제1호 서식]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 시행규칙 [별표 21의4]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

지정여부를 결정한다.

제5조(지정증의 발급 등) 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[별지 제2호 서식]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(이하 "지정증"이라 한다)을 발급하고,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(이하 "표지판"이라 한다)을 교부한다.

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.

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군수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할 수 있다.

제6조(지정의 유효기간)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,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)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,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.

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,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.

제8조(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) ① 군수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군수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
2.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
3.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
4. 강화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

제9조(모범사업자 관리대장)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(제4조 관련)

1. 규격 및 재질

가. 규격 : 50cm(가로)×30cm(세로)

나. 재질 : 스테인레스판 실크인쇄

2. 표지판 도안 등

가. 도안

지정번호 :

지정년월일 :

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

상호 : _____

위 업소를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「강화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.

강 화 군 수

나. 색상

○ 바탕 : 은회색

○ 글씨 : “자동차관리 모범사업자 상호명은 노랑색, 그 외는 흑색
다. 그 밖에 강화군 상징 등의 문양을 넣을 수 있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강화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(재지정) 신청서

관리사업 등록번호			연락처	
사업자	성명(법인명)		생년월일 (법인등록번호)	
	상 호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(사업장)	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의2, 같은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「강화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강화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강화군수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지정번호 : 제 호

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

- 업체명 :
- 대표자 :
- 소재지 :
- 업 종 :
- 유효기간 :

위 업소를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8조의2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「강화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1항에 따라 강화군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강 화 군 수

